

#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 남 시  
[자 치 행 정 과]

#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4. 11.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 1. 개정이유

-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민선6기 공약사항과 36만 자족도시 기반조성업무를 추진할 한시기구인 ‘행복도시사업단’ 신설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4급 한시기구 ‘행복도시사업단’ 신설(안 제4조)
  - 존속기한: 2017년 12월 31일
- 나. 행복도시사업단 부서 및 분장업무 조정(안 제5조의2)
  - 부서: 도시개발과, 친환경재생과, 공원녹지과
  - 분장업무 조정
    - 공영주차장·공영차고지 개발에 관한 사항 ⇒ 삭제
    - 도시공원·산림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 신설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생략

가.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및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제1항제5호

나. 사 유 :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부서협의 결과

가. 협의기간 : 2014년 11월 14일 ~ 11월 17일(3일간)

나. 협의결과

-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없음

## 9. 기타 참고사항 : 덧붙임

○ 하남시 행복도시사업단(4급) 직급채정 협의 결과 통보

- 경기도 기획담당관-12970(2014.11.11)

## 10. 관련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하남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조직 및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 를 “하남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4조 중 “개발사업단” 을 “행복도시사업단” 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개발사업단)” 을 “(행복도시사업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행복도시사업단은 한시기구로 하며, 도시개발과, 친환경재생과, 공원 녹지과를 둔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사업단은 다음 사항” 을 “행복도시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도시공원·산림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상수도과를 둔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인 행복 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사업단장”을 “행복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

부서명		자치행정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김 재 연
	팀장 직위·성명	시정팀장 박 진 호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정 유 정 031-790-5388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하남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조직 및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국장 및 담당관·단·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분청 국장의 직급, 분청의 담당관·단·과장 보좌·보조기관의 직급과 담당관·단·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생략)</p>	<p>제2조(국장 및 담당관·단·과장의 직급 등) ① <u>하남시(이하 “시”라 한다)</u></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국·단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안전자치행정국, 주민지원국, 도시건설국, <u>개발사업단</u>을 둔다.</p>	<p>제4조(국·단의 설치) -----</p> <p>-----</p> <p>----- <u>행복도시사업단</u>을 둔다.</p>
<p>제5조의2(<u>개발사업단</u>) ① <u>개발사업단</u>을 <u>한시기구</u>로 하며, 도시개발과, 친환경재상과를 둔다.</p> <p>② <u>개발사업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 13. (생략)</p> <p><u>14. 공영 주차장 · 공영차고지 개발에 관한 사항</u></p> <p>15. ~ 19. (생략)</p> <p><u>&lt;신 설&gt;</u></p>	<p>제5조의2(<u>행복도시사업단</u>) ① <u>행복도시사업단</u>을 <u>한시기구</u>로 하며, 도시개발과, 친환경재상과, 공원녹지과를 둔다.</p> <p>② <u>행복도시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p> <p>1. ~ 13.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15. ~ 19. (현행과 같음)</p> <p><u>20. 도시공원 · 산림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u></p>

현행	개정안
<p>제7조(도시건설국) ① <u>도시건설국에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상수도과를 둔다.</u></p> <p>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생략)</p> <p>2. <u>도시공원, 산림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u></p> <p>3. ~ 9. (생략)</p>	<p>제7조(도시건설국) ① <u>도시건설국에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상수도과를 둔다.</u></p> <p>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3. ~ 9. (현행과 같음)</p>

**【기타 참고사항 : 경기도 기획담당관-12970(2014.11.11.)】**

인내 / 영유권 / 자치행정부 0014-11-11 14:57:48

일찍이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경 기 도



수신 하남시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하남시 행복도시사업단(4급) 직급핵정 협의 결과 통보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하남시 자치행정과-17495(2014.08.18.)호의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현시 기구 직급핵정 협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준인건비 준수 및 자치법규 제정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 결과 :- 협의 의
- 현시기구 : 행복도시사업단(4급)
- 존속기한 : 2015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한
- ≡ 기존 현시기구 「개발사업단」은 14.12.31까지만 존속

· 끝.

경 기 도



주무관 오원선 조직담당관 심창보 기획담당관 권광 2014. 11. 11. / 여창섭  
 협조처  
 서울 기획담당관-12970 (2014. 11. 11.) / 접수 자치행정과-23886 (2014. 11. 11.)  
 우 442-781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세신로3가) 경기도청 기획과 / http://www.gg.go.kr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31-8008-4006 / 팩스번호 031-8008-2448 / eam@gg.go.kr / 대국민 공개

통일·한국과 중심 경기도 600년

문서관리카드 자치행정과-23886 / 1/1